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 2002~27

제출연월일: 2002. 7. . 제 출 자:거 창 군 수

□ 개정이유

○ 기초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원회설치로 전문위원 등 인력증원에 따라 군의 정원을 조정하여 증원하고,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와 한시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명시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(제2조 제2호)
 -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인력 보강 및 정원조정 : 6명
 - 집행기관의 정원 : 553명⇒555명(증 2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0명⇒ 14명(증 4)
 - 총 계 : 563명 ⇒ 569명(증 6)
-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2003년 2월28일까지로 규정(부 칙 제3조 제2항)
- 한시정원(주민자치, 정보화·실업대책 추진, 민원봉사상 수상자) 6명 중
 - 5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며, 그 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 시정원으로 환원하고
 - 1명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상시정원으로 환원함(부칙 제5조)

□ 개정근거

-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및 증설에 따른 인력보강 정원 승인 (경상남도 행정12200-11337(2002.7.16)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3항 및 제19조 제6항
- 지방자치단체 정·현원 관리지침 (행정자치부 자제 12200 ~ 362, 2002.6.10)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원의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69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"

- 1. 집행기관의 정원 : 555명
-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

조례 제1541호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은 2003년 2월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조례 제1591호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5조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정원 6명 중 5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, 그 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하며, 1명은 최초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개정조례 1541호 부칙 제3조제2항은 2002 년 8월1일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원의 총수) <u>군의 집행기관 및</u>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<u>같다.</u> 1. 집행기관의 정원 : 553명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0명 총계 : 563명	제2조 (정원의 총수) <u>군에 두는 지방공</u> 무원 정원의 총수는 569명이며, 다음 <u>각 호와 같다.</u> 1. 집행기관의 정원 : 555명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4명
부 칙(제1541호) 제3조 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	부 칙(제1541호) 제3조 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
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	① (현행 본문과 같음)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 과하는 현원 3명은 2003년 2월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
부칙(제1591호)	부칙(제1591호)
제5조 (한시정원)집행기관의 정원중 3명은 2002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.	제5조 (한시정원)집행기관의 정원 6명 중 5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고, 그 중 2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 으로 환원하며, 1명은 최초 결원이 발 생한 경우에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.